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 수정 1 차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053,247,389 | 31,597,422 |
| 일반회계 | 1,053,247,389 | 31,597,422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3년 채무부담 행위는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4 조 2023년 계속비 사업은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85,678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